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19.7.18)에 따른 사업범위 추가
- 「공사채등록법」 폐지(시행 '19.9.16. 법률 제14096호, '16.3.22. 타법폐지)에 따른 채권 전자등록발행 근거 신설
- 지하철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및 5호선 연장 하남선 복선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구축과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19.7.18. 시행)
- 제2019-8회 이사회(임사회) (2019. 8.28.)
 -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 「공사채등록법」 폐지(시행'19.9.16. 법률 제14096호, '16.3.22. 타법폐지)
- 제2019-9회 이사회(임사회) (2019. 9.25.)
 -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 지하철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서 부속합의서 (2016.11.24.)
-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019.10.4.)
- 제2019-10회 이사회(임사회) (2019.10.31.)
 - 서울교통공사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2 주요내용

□ 정관 제6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 신규 사업 범위 3개 호 신설

- 제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 제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 제10호: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 기존 제6조 제1항 8호는 신규 사업범위 추가로 호 번호 변경(제11호)
- ※ 이사회 의결('19.08.29, 2019-8회 이사회 제13호 안건)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현황 》

- 주요골자: 제19조제1항 사업의 범위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 신설
- 시 행 일: 2019.7.18.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조례 제7241호)]

□ 정관 제42조(사채의 발행 등) 제3항에 채권 전자등록발행 근거 신설

- 사유: 공사채등록법 폐지('19.9.6)

《 신설 항 》

- ③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을 전자 등록한다.

- ※ 이사회 의결('19. 9.25, 2019-9회 이사회 제18호 안건)

《 관련 법 개정 현황 》

- 공사채등록법 폐지(사행 '19.9.16. 법률 제14096호, '16.3.22. 타법폐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사행 '19.9.16.법률 제14096호)
 -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등록법」 은 폐지한다.
- 상법 제 478조(채권의 발행) 제3항 (법률 제10600호, '11.4.14., 일부개정)
 - 회사는 제 1항의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

□ 정관 <별표2> 정원표 개정

○ 총정원 조정

구 분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한시정원
현 행	17,306	6	17,271	29	<신설>
감 축	△781	0	△781	0	-
증 원	215	0	38	0	177
개 정	16,740	6	16,528	29	177

- 정원감축 : 통합 공사 출범에 따른 유사, 중복인력 등 1,029명 감축 대상 중
2018년, 2019년 감축분 △781명 반영

※ 연도별 감축 : 2018년(△475명), 2019년(△306명), 2020년(△248명)

《연도별 운영정원 관리(20년까지 목표정원 16,277명)》

· 지하철통합관련 노사정 합의('16.11.24) 이행(17,306 → 16,277 : △1,029명)

✓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부속협약서(제5호 인력규모)

- 통합공사 출범이후 유사 중복인원 등을 감안하여 4년간 단계적으로 감조정하여 14,645명으로 함. ※ 정원 14,645명 = 15,674명 - 1,029명(중복인원 등)

※ 연도별 정원 : 2020.12.31. 16,277명(△248명)

- 정원증원 : 하남선 운영인력 증원(215명)

· 서울시 구간(1역, 1.11km) 38명, 하남시 구간(4역, 6.609km) 177명

※ 한시정원 177명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1,029명 감축완료시 총정원 : 16,492명('20.12.31)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이하
현행	17,271	45	198	1,357	15,671
감축	△781				△781
증원	38			+1	+37
개정	16,528	45	198	1,358	14,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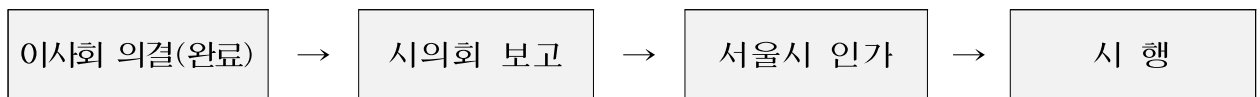
- 한시정원 <신설>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이하
신설	177	0	1	13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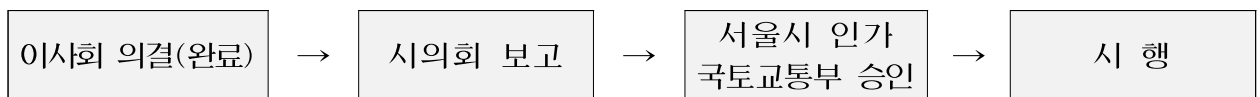
3 행정사항

□ 개정절차

○ 제6조 및 제42조



○ 별표2 정원표



- 붙임 : 1.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제2019-8회 이사회 의결서 1부.
 3. 제2019-9회 이사회 의결서 1부.
 4. 제2019-10회 이사회 의결서 1부. 끝.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7.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p>(신설)</p> <p>(신설)</p>	<p>제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현행과 같음) <p><u>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u></p> <p><u>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u></p>	<p>「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p>

현 행	개 정(안)	비고
<p>(신설)</p> <p>8. (호 번호 변경)</p> <p>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에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p> <p>③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④ 지하철이용 승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도시철도이용시민자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제42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p><u>10.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u></p> <p><u>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2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전자증권법」 개정('19.9.16. 시행)으로 우리공사 채권 발행의 근거인 「당사채등록법」이 폐지되어 동법에 의한 채권 신규 발행이 불가하여 전자등록발행 근거를 마련</p>

현 행	개 정(안)	비고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모집 및 인수방법 (신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을 전자 등록한다.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2] 정 원 표(제26조 관련)</p> <p>가. 총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총정원</th> <th>임원</th> <th>일반직</th> <th>청원경찰</th> </tr> <tr> <td>17,306</td> <td>6</td> <td>17,271</td> <td>29</td> </tr> </table> <p>○ 연도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8.12.31.(16,831명), '19.12.31.(16,525명), '20.12.31.(16,277명)</p> <p>나. 일반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1급</th> <th>2급</th> <th>3급</th> <th>4급이하</th> </tr> <tr> <td>17,271</td> <td>45</td> <td>198</td> <td>1,357</td> <td>15,671</td> </tr> </table> <p>다. 청원경찰 : 29명</p> <p>※ 9호선운영부문(CIC) 정원(255명)은 9호선운영부문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17,306	6	17,271	29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7,271	45	198	1,357	15,671	<p>[별표2] 정 원 표(제26조 관련)</p> <p>가. 총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총정원</th> <th>임원</th> <th>일반직</th> <th>청원경찰</th> <th>한시정원</th> </tr> <tr> <td style="color: blue;">16,740</td> <td>6</td> <td style="color: blue;">16,528</td> <td>29</td> <td style="color: blue;">177</td> </tr> </table> <p>○ 연도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20.12.31.(16,492명) ※ 한시정원 177명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p> <p>나. 일반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1급</th> <th>2급</th> <th>3급</th> <th>4급이하</th> </tr> <tr> <td style="color: blue;">16,528</td> <td>45</td> <td style="color: blue;">198</td> <td style="color: blue;">1,358</td> <td style="color: blue;">14,927</td> </tr> </table> <p>다. 한시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1급</th> <th>2급</th> <th>3급</th> <th>4급이하</th> </tr> <tr> <td style="color: blue;">177</td> <td style="color: blue;">0</td> <td style="color: blue;">1</td> <td style="color: blue;">13</td> <td style="color: blue;">163</td> </tr> </table> <p>라. 청원경찰 : 29명</p> <p>※ 9호선운영부문(CIC) 정원(255명)은 9호선운영부문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한시정원	16,740	6	16,528	29	177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6,528	45	198	1,358	14,927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77	0	1	13	163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17,306	6	17,271	29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7,271	45	198	1,357	15,671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한시정원																																													
16,740	6	16,528	29	177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6,528	45	198	1,358	14,927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77	0	1	13	163																																													

【붙임2】

- 서울교통공사 -
제2019-8회 이사회(임시회) 의결서

일시	2019.8.29.(목) 15:00~16:26	장소	스마트안전통합상황실 (본사 5층)
소집자	의장 김상범		
출석 이사	1. 사장 김태호 2. 이사 최정균 3. 이사 한재현 4. 이사 김석태 5. 이사 임동국 6. 이사 나상윤 7. 이사 이진선 8. 이사 박희석 9. 이사 박원준		
결석이사	오재강 이사, 조중래 이사, 김미란 이사, 백일현 재정기획관		
참여자	기획처장, 재무처장, 차량정비처장, 신교통사업처장, 송무팀장		

의안번호	의안제목	소관부서	의결내용
제13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법무실	원안의결
제14호	부족자금 장기차입 계획(안)	재무처	원안의결
제15호	2호선(234칸) 노후전동차 불용처리(안)	차량정비처	원안의결
제16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관리운영 위수탁사업 계약체결(안)	신교통사업처	원안의결
제17호	하남선 위수탁협약 추진계획(안)	신교통사업처	원안의결

- 제13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은 “원안의결”한다
- 제14호 「부족자금 장기차입 계획(안)」은 “원안의결”한다
- 제15호 「2호선(234칸) 노후전동차 불용처리(안)」은 “원안의결”한다
- 제16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관리운영위수탁사업 계약체결(안)」은 “원안의결”한다
 - 협약 (가)계약서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
- 제17호 「하남선 연장구간 위수탁사업 계약체결(안)」은 “원안의결”한다
 - 공사에 대한 하남시의 운영 결손금 보전 이행에 대한 내용을 하남시와 재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권고함.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 연서 날인함.

2019년 8월 29일

의 장	김 상 범 (인)	김상범
사 장	김 태 호 (인)	김태호
이 사	최 정 균 (인)	최정균
이 사	오 재 강 (인)	불참
이 사	한 재 현 (인)	한재현
이 사	김 석 태 (인)	김석태
이 사	백 일 현 (인)	불참
이 사	임 동 국 (인)	임동국
이 사	조 중 래 (인)	불참
이 사	나 상 윤 (인)	나상윤
이 사	이 진 선 (인)	이진선
이 사	김 미 란 (인)	불참
이 사	박 회 석 (인)	박회석
이 사	박 원 준 (인)	박원준

위 결의를 확인함.

감 사 (인) 공석

- 서울교통공사 -

제2019-9회 이사회(임시회) 의결서

일시	2019.9.25.(수) 15:00 ~ 16:48	장 소	스마트안전통합상황실 (본사 5층)
소집자	의 장 김상범		
출석 이사	1. 사 장 김태호 2. 이 사 최정균 3. 이 사 오재강 4. 이 사 한재현 5. 이 사 김석태 6. 이 사 백일헌 7. 이 사 나상윤 8. 이 사 이진선 9. 이 사 박희석 10. 이 사 박원준		
결석이사	임동국 교통기획관, 조중래 이사, 김미란 이사		
참 여 자	법무실장, 보건환경처장, 예산처장, 신교통사업처장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소관부서	의결내용
제18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법무실	원안의결
제19호	2019년 안전기본계획(안)	보건환경처	원안의결
제20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처	수정의결
제21호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예산처	수정의결

○ 의결주문

- 제18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은 “원안의결” 한다
- 제19호 “2019년 안전기본계획(안)”은 “원안의결” 한다
- 제20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조정, 인건비, 평가급 예산조정을 금회 추경 편성에서 제외하고 인건비 부족분 등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한다
- 제21호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2019년~2023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한다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

2019년 9월 25일

의 장	김 상 범 (인)	김상범
사 장	김 태 호 (인)	김태호
이 사	최 정 균 (인)	최정균
이 사	오 재 강 (인)	오재강
이 사	한 재 현 (인)	한재현
이 사	김 석 태 (인)	김석태
이 사	백 일 헌 (인)	백일헌
이 사	임 동 국 (인)	불참
이 사	조 중 래 (인)	불참
이 사	나 상 윤 (인)	나상윤
이 사	이 진 선 (인)	이진선
이 사	김 미 란 (인)	불참
이 사	박 희 석 (인)	박희석
이 사	박 원 준 (인)	박원준
감 사	(인)	공석

위 결의를 확인함.

【붙임4】

- 서울교통공사 -
제2019-10회 이사회(임시회) 의결서

일시	2019.10.31(목)15:00 ~ 16:04	장 소	스마트안전통합상황실 (본사 5층)
소집자	의 장 김상범		
출석 이사	1. 사 장 김태호 2. 이 사 최정균 3. 이 사 오재강 4. 이 사 한재현 5. 이 사 김석태 6. 이 사 조중래 7. 이 사 나상운 8. 이 사 권영빈 9. 이 사 이진선 10. 이 사 김미란 11. 이 사 박희석 12. 이 사 박원준		
결석이사	백일헌 재정기획관, 임동국 교통기획관		
참 여 자	기획처장, 인사처장, 노사협력처장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소관부서	의결내용
제22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기획처	원안의결
제23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처	수정의결

○ 의결주문

- 제22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의결” 한다
- 제23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육아휴직자의 승진제한 개선은 원안의결 하고 직군, 직렬, 직종 분류표 및 승진경로표를 인사규정에서 인사규정시행내규로 위임하는 건은 보류”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한다.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

2019년 10월 31일

의 장	김 상 범 (인)	김상범
사 장	김 태 호 (인)	김태호
이 사	최 정 균 (인)	최정균
이 사	오 재 강 (인)	오재강
이 사	한 재 현 (인)	한재현
이 사	김 석 태 (인)	김석태
이 사	백 일 현 (인)	현안 업무 불참
이 사	임 동 국 (인)	현안 업무 불참
이 사	조 중 태 (인)	조중태
이 사	나 상 윤 (인)	나상윤
이 사	이 진 선 (인)	이진선
이 사	김 미 란 (인)	김미란
이 사	권 영 빈 (인)	권영빈
이 사	박 희 석 (인)	박희석
이 사	박 원 준 (인)	박원준
감 사	(인)	공석